

구미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 미 시

구미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15. . .
제출자 : 구미시장

1. 제안이유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 및 제16조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구미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대하여, 상위법령에 상충되는 위탁운영단체 규정을 정비하고,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등에 상충되어 시민에게 불편·부담이 되는 규제 개선을 위해 조례 일부개정을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운영단체에 대한 규정 전면 개정 (안 제7조)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 규정에 의거, 청소년단체에 위탁 명시

나. 사용료 반환에 관한 조항 조례에 명시 (안 제11조)

- 지방자치법 제139조 규정에 의거, 사용료 환불기준 조례에 명시

다. 사용허가 취소 등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규정 개선 (안 제15조, 18조)

- 민법 제750조 규정에 의거, 운영기관과 사용자 간 불평등한 손해배상 규정 개선

3.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청소년활동 진흥법」
- 2) 「청소년 기본법」
- 3) 「민법」

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5)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구미시 조례 제 호

구미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장은 수련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1조제3항 중 “규칙으로 정한다”를 “별표 3과 같다”로 한다.

제15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수련시설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제3항을 삭제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운영·위탁 중인 시설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위탁 중인 시설로 본다.

【별표3】

□ 사용료의 환불기준

1. 수영장, 체육관, 수련활동 등 이용료

구 분	환불신청	환 불 금 액
○ 시설 운영자 귀책사유	개시일 이전	전액 반환 및 총 이용금액의 10% 배상
	개시일 이후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 반환 및 총 이용금액의 10% 배상
○ 사용자 귀책사유	개시일 이전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반환
	개시일 이후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를 공제 후 반환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개시일 이전	전액 반환
	개시일 이후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 후 반환

※ 개시일이란, 사용횟수 또는 사용기간이 시작되는 초일을 말함

2. 강당, 회의실, 숙박시설 등 대관료

구 분	환불신청	환 불 금 액
○ 시설 운영자 귀책사유	개시일 이전	전액 반환 및 총 이용금액의 10% 배상
	개시일 이후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 반환 및 총 이용금액의 20% 배상
○ 사용자 귀책사유	개시일 3일 이전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반환
	개시일 2일 이전부터 개시일 이전	총 이용금액의 30% 공제 후 반환
	개시일 이후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50%를 공제 후 반환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적인 사유	개시일 이전	전액 반환
	개시일 이후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 후 반환

※ 개시일이란, 사용이 개시되는 시각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운영 등) ① <u>시장은 수련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구미시설공단, 청소년관련학과가 있는 대학(교),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 등에 위탁하거나 법인을 설립하여 위탁 운영할 수 있다.</u>	제7조(운영 등) ① <u>시장은 수련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u>
1. <u>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장비·시설 및 기술</u>	<삭 제>
2. <u>책임감·능력·공신력 및 재정적 부담능력</u>	<삭 제>
3. <u>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타당성</u>	<삭 제>
4. <u>관련 분야에 대한 경험·전문성 및 사무처리 능력</u>	<삭 제>
② <u>제1항에 따라 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은 단체 또는 기관(이하 "위탁운영기관"이라 한다)은 관리·운영에 관한 세부 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과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u>	<삭 제>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⑤ <u>위탁운영기관은 시장의 지도</u> <u>· 감독을 받아야 한다.</u> 제11조(사용료 등 징수) ①·② (생략) ③ <u>사용료의 반환 등에 관한 사</u> <u>항은 규칙으로 정한다.</u> 제15조(사용허가 취소) ① (생 략) ② <u>제1항에 따른 처분으로 인하</u> <u>여 수련시설의 사용을 허가받은</u> <u>자(이하"사용자"라 한다)에게</u> <u>생긴 불이익에 대하여 시장 또</u> <u>는 위탁운영기관은 이를 책임지</u> <u>지 아니한다.</u> 제18조(손해배상 등) ① <u>시장 또</u> <u>는 위탁운영기관은 사용자의 귀</u> <u>책사유로 인하여 입은 손해에</u> <u>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u> <u>다.</u> ② (생략) ③ <u>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등</u> <u>으로 인하여 시설 내에서 발생</u> <u>한 모든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u> <u>자가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을</u> <u>진다.</u>	<u><삭 제></u> 제11조(사용료 등 징수)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u>별표 3과 같다.</u> 제15조(사용허가 취소) ① (현행 과 같음) <u><삭 제></u> 제18조(손해배상 등) ① <u>사용자는</u> <u>사용기간 중 수련시설에 대하여</u> <u>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u> <u>하여야 한다.</u> ② (현행과 같음) <u><삭 제></u>
--	--

관계법령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수련시설의 설치·운영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기본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은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국가는 둘 이상의 시·도 또는 전국의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국립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2.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각각 제10조제1호가목에 따른 청소년수련관을 1개소 이상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3.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읍·면·동에 제10조제1호다목에 따른 청소년문화의 집을 1개소 이상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4.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0조제1호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특화시설·청소년야영장 및 유스호스텔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국가는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련시설의 설치·운영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 ③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규모의 부지 변경, 건축 연면적의 증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이하 "수련시설 설치·운영자"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6조(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제11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수련시설 설치·운영자는 수련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탁 받은 청소년단체(이하 "위탁운영단체"라 한다)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위탁된 수련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위탁운영단체 및 그 대표자와 임원에 관하여는 제14조 및 제15조를 준용한다.

□ 청소년 기본법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따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사용·수익허가의 취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0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을 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2.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4.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5. 제22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수익을 허가한 행정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게 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경우에 그 취소로 인하여 해당 허가를 받은 자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한 경우 그 행정재산이 기부채납된 행정재산으로서 제2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이를 사용·수익하고 있는 자가 있을 때에는 그 사용·수익자에게 취소의 사실을 알려야 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8조(사용·수익허가의 취소로 인한 손실보상) ①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사용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상하여야 할 보상액은 다음과 같다.

1. 사용·수익허가의 취소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남은 허가기간에 해당하는 시설비
2. 시설의 이전이나 수목의 이식(移植)에 필요한 경비
3. 사용·수익허가가 취소되어 시설을 이전하거나 수목을 이식하거나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게 되는 경우 그 이전·설치기간 동안 영업을 할 수 없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평가액

② 제1항에 따른 보상액의 산정을 위한 평가에 관하여는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감정평가업자가 없는 지역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있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에 의뢰하여 평가한 평가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 지방자치법

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소관 실·과		가족지원과
입 안 자	담 당 관	김 용 학
	담 당	김 영 철
	담 당 자	심 주 희 (480-6574)